의안번호	제3053호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의 결 사 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6. 1. 9.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제3053호

제출연월일: 2026. 1. 9.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안사유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의 시행기간 만료(2025. 12. 31.)와 특화사업자의 불일치에 따라 특구계획을 정비하고, 해양·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부 특화사업을 확대·조정함으로써 특구 운영의 지속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안) 내용

가. 특화사업자의 시행기간 변경

1) 기존: 2007년 ~ 2025년

2) 변경: 2007년 ~ 2028년(3년 연장)

나. 특화사업자 명칭 및 주소 변경

지구명	특화사업자		비고
	기정	변경	
내산지구	삼강엠엔티(주) (동해면 내산3길 51-1)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좌동)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주) (동해면 용정6길 51-61)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동해면 내산3길 51-1)**	
장좌지구	삼강에스앤씨(주)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삼강에스앤씨(주)** (좌동)	대표자 변경: 송무석→이승철

다. 특화사업의 내용 변경

지구명	세부사업		비고
	당초 (3개 특화사업, 5개 세부사업)	변경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내산지구	①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① 조선기자재 생산** ②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조선기자재 생산 (완료사업) 포함
양촌·용정지구	②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③ 선박개조·수리 ④ 해상풍력발전전문단지	③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④ 선박개조·수리 ⑤ 해상풍력발전전문단지	
장좌지구	⑤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⑥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⑦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⑧ 선박개조·수리**	기존완료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재편

3. 청취 경위

○ 2025. 12. 3.: 특구계획변경 신청서 제안(특화사업자→고성군)

○ 2025. 12. 12.~2026. 1. 2.: 특구계획변경(안) 공고

○ 2025. 12. 19.~2026. 1. 2.: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 2025. 12. 30.: 공청회 개최 공고

○ 2026. 1. 16.: 공청회 개최

○ 2026. 1.중: 군의회 의견청취

4. 근거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16조

붙임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안) 1부. 끝.

붙임 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안)**

Ⅰ. 특구계획(변경)안 요약

구 분	당 초	변 경
지정 기간	• 2007~2025년	• 2007~**2028년(3년 연장)**
위 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 변경없음
면 적	• 3,844,176㎡	• 변경없음
특화 사업자	• 총괄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고성군수	• 변경없음
	• 내산지구 - 법인명 : 삼강엠앤티(주) - 대표자 : 송무석 - 주 소 :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내산지구 - 법인명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 대표자 : **이승철** - 주 소 :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양촌·용정지구 - 법인명 : 삼호조선해양(주) - 대표자 : 최평호 - 주 소 : 고성군 동해면 용정6길 51-61	• 양촌·용정지구 - 법인명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 대표자 : **이승철** - 주 소 :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장좌지구 - 법인명 : 삼강에스앤씨(주) - 대표자 : 송무석 - 주 소 :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 장좌지구 - 법인명 : 삼강에스앤씨(주) - 대표자 : **이승철** - 주 소 :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특화 사업비	• 9,453억원(민자 9,453억원)	• **12,882억원(증 3,429억원, 증 36.3%)** **(민자 12,882억원)**
특화 사업	• **3개 특화사업, 5개 세부사업** **[1] 내산지구** ① 조선기자재 생산(종료) ② 해양플랜트설비 생산(계속) **[2] 양촌·용정지구** ③ 중대형·특수선박 건조(계속) ④ 선박개조·수리(계속) ⑤ 해상풍력발전설비 생산(계속) **[3] 장좌지구** ⑥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종료) ⑦ 해양플랜트설비 생산(계속) ⑧ 선박개조·수리(종료)	•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1] 내산지구** **① 조선기자재 생산(계속)** ② 해양플랜트설비 생산(계속) **[2] 양촌·용정지구** ③ 중대형·특수선박 건조(계속) ④ 선박개조·수리(계속) ⑤ 해상풍력발전설비 생산(계속) **[3] 장좌지구** **⑥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계속)** ⑦ 해양플랜트설비 생산(계속) **⑧ 선박개조·수리(계속)**

Ⅱ. 특구계획(변경) 신청 배경 및 필요성

1. 신청 배경 및 목적

○ (사업기간 연장 통한 특화사업 안정화) 조선업 부진에 따라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영난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해양플랜트 중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화사업 시행기간 연장 통해 특구의 원활한 조성 완료 도모

○ (신 성장산업 도입) 현재 양촌·용정지구는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내 특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의 도입을 통해 특화특구계획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플랜트산업 중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의 특화사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해상풍력발전설비 생산’을 세부사업으로 추가하여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양촌·용정지구의 특화사업자 대표자 변경) 양촌·용정지구의 특화사업자가 변경되어 특구계획에 반영 필요

2. 계획 변경 필요성

○ 고성군은 2008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조선·해양산업특구의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

○ 「(2015~2030) 제3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고성군, 2016.07.」에서는 첨단 조선해양 및 해양레저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경제산업부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으로 조선해양산업특구 활성화 및 해양플랜트 생산거점화를 제안하고 있음

○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해양플랜트, 선박개조·수리 등 특화사업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에서의 지원(고성군 특구 관리 전담 부서 운영), 국가차원의 배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에 힘입어 현재는 기업 경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다만, 최근 조선수주 증가로 수주잔고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조선업 특성상 조선수주 증가의 효과를 통해 단지 조성 등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어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특화사업 중 내산지구의 조선기자재 생산은 2007년 특구 지정 당시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며, 장좌지구의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및 선박개조·수리는 특구 변경 시 변경 및 추가하여 운영해 오던 사업으로서 부지조성 및 시설물 설치 완료 등으로 인해 특화사업 계획에 의한 투자가 종료되어 2022년 특구계획변경 시 종료사업으로 표기하였으나,

○ 현재 해당 사업은 관련 작업 등 운영중인 상황으로서 사업운영 자체를 종료한다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혼선 방지를 위해 종료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수정

○ 또한, 양촌·용정지구의 특화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주)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Ⅲ. 특구계획(변경)안 상세

1. 특구 명칭 (변경없음)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 특구 위치 (변경없음)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 내산지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75-8번지 일원
- 양촌·용정지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산9-1→산9-7번지 일원(지적분할)
- 장좌지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19-1번지 일원

3. 특구 면적 **(변경없음)**

○ 면적 : 3,884,176㎡

구 분	계(㎡)	육 지 부(㎡)	공유수면 매립부(㎡)	공유수면 점.사용(㎡)
합 계	3,884,176	1,388,248	1,143,627	1,352,301
내 산 지 구	450,934	193,544	77,365	180,025
양촌.용정지구	1,920,492	731,988	936,849	251,655
장 좌 지 구	1,512,750	462,716	129,413	920,621

4. 특구 기간 **(변경)**

○ (현재) 지정기간: 2007년~2025년

○ (변경) 지정기간: 2007년~**2028년(3년 연장)**

5. 특화사업자 **(변경)**

○ 총괄특화사업자: 경상남도 고성군수

○ 단위특화사업자

구 분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법인명	(당초)삼강엠앤티(주) **(변경)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당초)삼호조선해양(주) **(변경)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삼강에스앤씨(주)
대표자	(당초)송무석 **(변경)이승철**	(당초)최평호 **(변경)이승철**	(당초)송무석 **(변경)이승철**
주 소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당초)동해면 용정6길 51-61 **(변경)동해면 내산3길 51-1**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6. 규제특례 **(변경없음)**

○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59조(「토지보상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국토계획법」 제30조 의제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64조 제1항 제2호(「국토계획법」 제40조 의제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64조 제3항 제2호(「농지법」 제31조 의제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65조 제1항 제2호(「산지관리법」 제14조 의제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65조 제1항 제4호(「농지법」 제34조 의제에 관한 특례)

7. 총사업비 **(변경)**

○ (현재) 9,453억원(민자 9,453억원)

○ **(변경) 12,882억원(민자 12,882억원)**

○ (증감) 3,429억원(36.3%↑)(양촌용정산단 사업비 반영)

8. 재원별 투자계획 **(변경)**

(당초)

(단위: 억원)

구분	기투입 사업비(A)	연도별투자계획(증가사업비)				변경 사업비(A+B)
		소계(B)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938	6,515	932	2,692	2,891	9,453
국비	-	-	-	-	-	-
도비	-	-	-	-	-	-
군비	-	-	-	-	-	-
민자	2,938	6,515	932	2,692	2,891	9,453

(변경)

(단위: 억원)

구분	기투입 사업비(A)	연도별투자계획(증가사업비)					변경 사업비(A+B)
		소계(B)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7,369	5,513	3,123	1,710	580	100	12,882
국비	-	-	-				-
도비	-	-	-				-
군비	-	-	-				-
민자	7,369	5,513	3,123	1,710	580	100	12,882

9. 사업별 투자계획 **(변경)**

(당초)

(단위: 억원)

특화사업명	세부사업명	기투입 사업비 (A)	연도별투자계획				변경 사업비 (A+B)	비고
			소계(B)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획	2,938	6,515	932	2,692	2,891	9,453	**계속5 종료3**
내산지구	소계	1,022	758	146	272	340	1,780	**계속1 종료1**
	조선기자재 생산	1,010	–	–	–	–	1,010	**종료사업**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12	758	146	272	340	770	계속사업
양촌·용정 지구	소계	740	4,871	642	2,131	2,098	5,611	**계속3**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740	2,437	323	1,063	1,051	3,177	계속사업
	선박개조·수리	–	706	94	308	304	706	계속사업
	해상풍력발전설비 생산	–	1,728	225	760	743	1,728	계속사업
장좌지구	소계	1,176	886	144	289	453	2,062	**계속1 종료2**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738	–	–	–	–	738	**종료사업**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38	886	144	289	453	924	계속사업
	선박개조·수리	400	–	–	–	–	400	**종료사업**

(변경)

(단위: 억원)

특화 사업명	세부사업명	기투입 사업비 (A)	연도별투자계획					변경 사업비 (A+B)	비고
			소계(B)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계획	7,369	5,513	3,123	1,710	580	100	12,882	**계속8**
내산 지구	소계	1,440	340	340	–	–	–	1,780	**계속2**
	조선기자재 생산	1,010	–	–	–	–	–	1,010	**종료사업 →계속사업**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430	340	340	–	–	–	770	계속사업
양촌·용정 지구	소계	4,320	4,720	2,330	1,710	580	100	9,040	**계속3**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2,446	2,672	1,319	968	328	57	5,118	계속사업
	선박개조·수리	544	594	293	215	73	13	1,138	계속사업
	해상풍력발전설비 생산	1,330	1,454	718	527	179	30	2,784	계속사업
장좌 지구	소계	1,609	453	453	–	–	–	2,062	**계속3**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738	–	–	–	–	–	738	**종료사업 →계속사업**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471	453	453	–	–	–	924	계속사업
	선박개조·수리	400	–	–	–	–	–	400	**종료사업 →계속사업**

10. 특화사업 (변경)

구분	특화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여부	비고
1	내산지구	조선기자재 생산	**(종료→계속사업)**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계속사업)	
2	양촌·용정지구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계속사업)	
		선박개조·수리	(계속사업)	
		해상풍력발전설비 생산	(계속사업)	
3	장좌지구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종료→계속사업)**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계속사업)	
		선박개조·수리	**(종료→계속사업)**	

[특화사업 변경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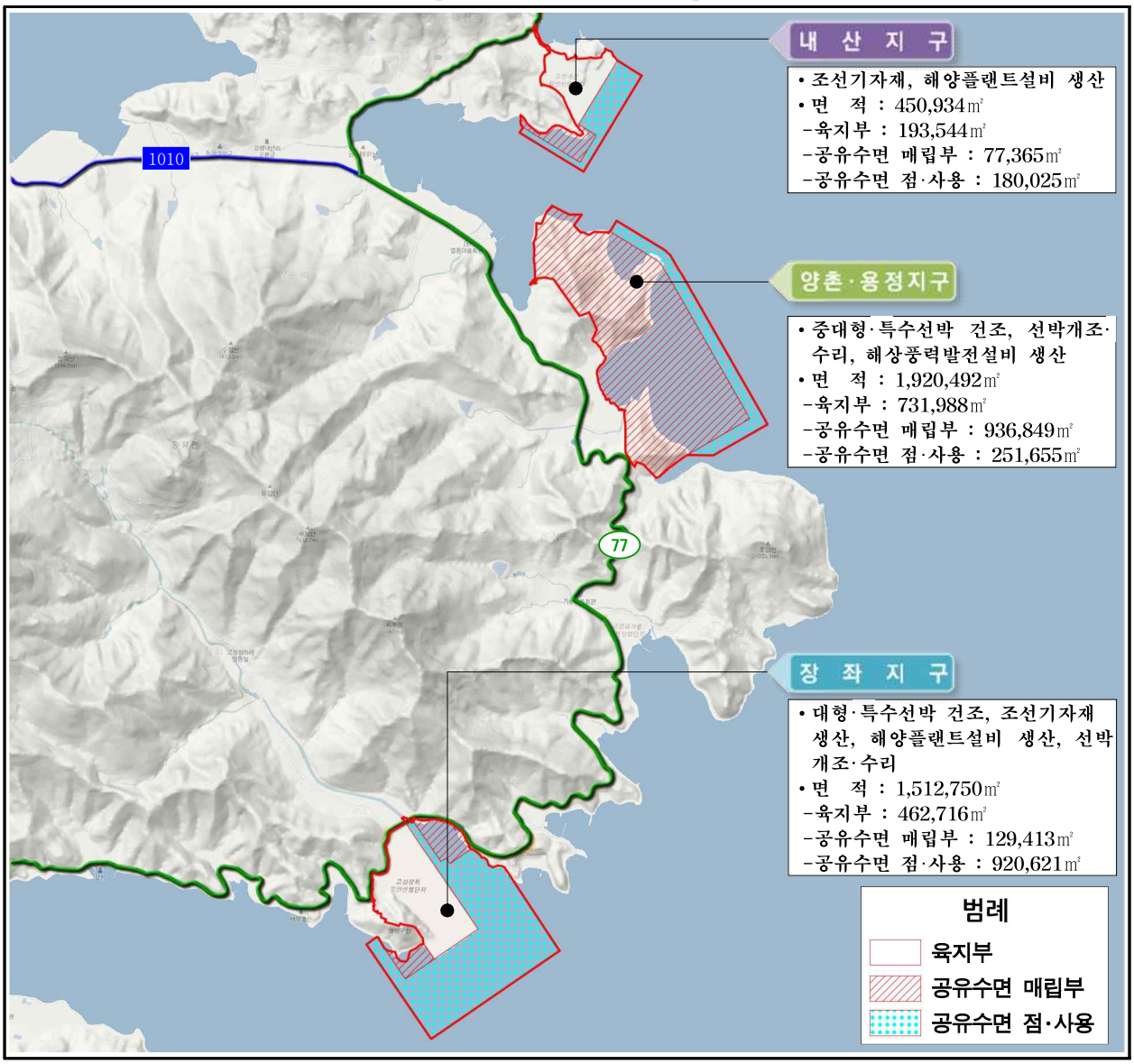
내 산 지 구
•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 면 적 : 450,934㎡
-육지부 : 193,544㎡
-공유수면 매립부 : 77,365㎡
-공유수면 점·사용 : 180,025㎡
양촌·용정지구
• 중대형·특수선박 건조, 선박개조·수리, 해상풍력발전설비 생산
• 면 적 : 1,920,492㎡
-육지부 : 731,988㎡
-공유수면 매립부 : 936,849㎡
-공유수면 점·사용 : 251,655㎡
장 좌 지 구
• 대형·특수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선박개조·수리
• 면 적 : 1,512,750㎡
-육지부 : 462,716㎡
-공유수면 매립부 : 129,413㎡
-공유수면 점·사용 : 920,621㎡
1010
77
범례
육지부
공유수면 매립부
공유수면 점·사용

1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고성조선해양산업특 구	합 계	2,531,875	100.0	
	산업시설용지	1,906,752	75.3	
	지원시설용지	25,809	1.0	
	공공시설용지	163,411	6.5	
	녹지용지	435,903	17.2	
내산지구	소 계	270,909	10.7	
	산업시설용지	240,333	9.5	
	지원시설용지	5,728	0.2	
	공공시설용지	12,004	0.5	
	녹지용지	12,844	0.5	
양촌·용정지 구	소 계	1,668,837	65.9	
	산업시설용지	1,141,610	45.1	
	지원시설용지	-	-	
	공공시설용지	120,831	4.8	
	녹지용지	406,396	16.0	
장좌지구	소 계	592,129	23.4	
	산업시설용지	524,809	20.7	
	지원시설용지	20,081	0.8	
	공공시설용지	30,576	1.2	
	녹지용지	16,663	0.7	

※ 공유수면 점.사용구역은 제외

○ 토지이용계획도

- 내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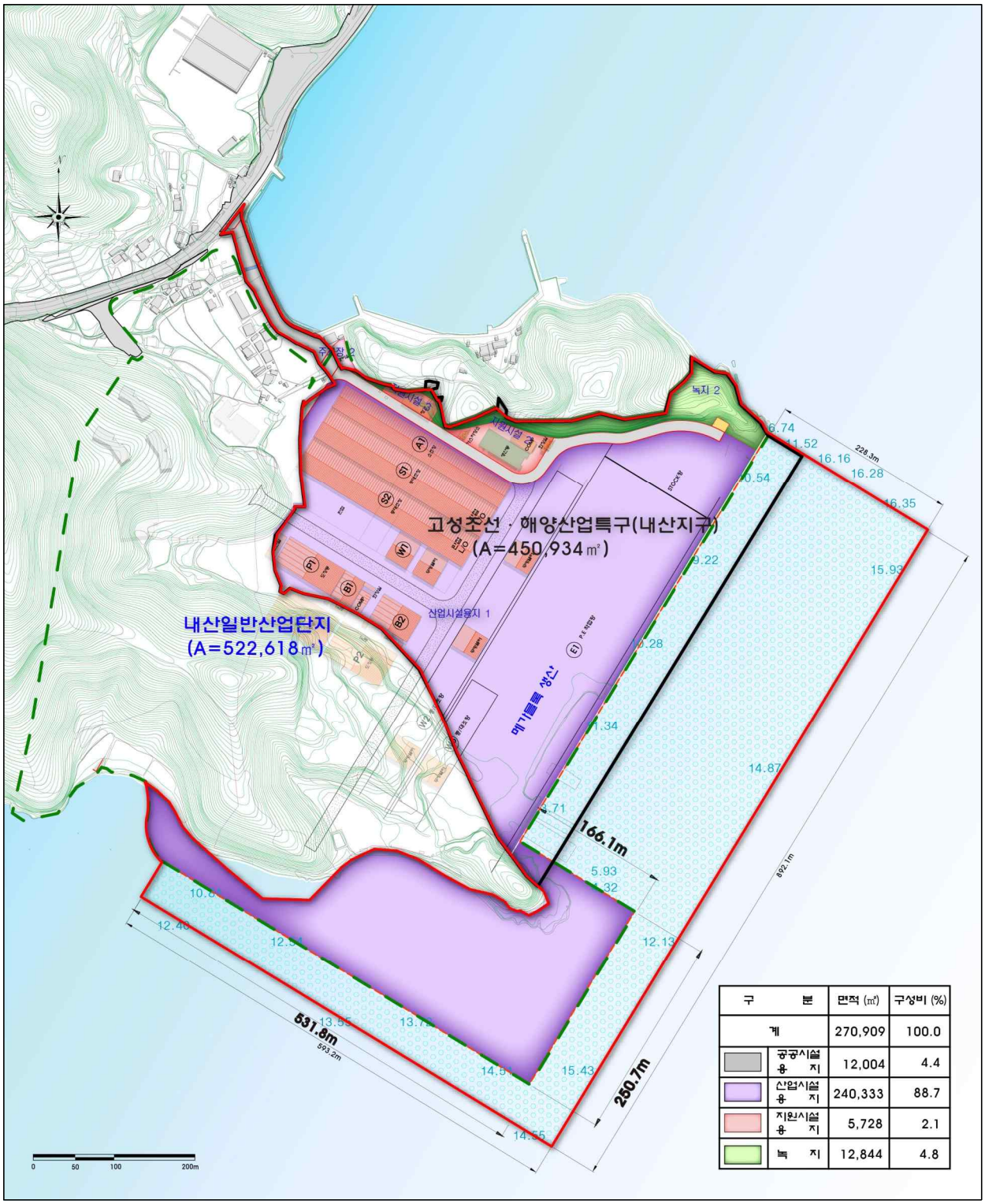

- 양촌・용정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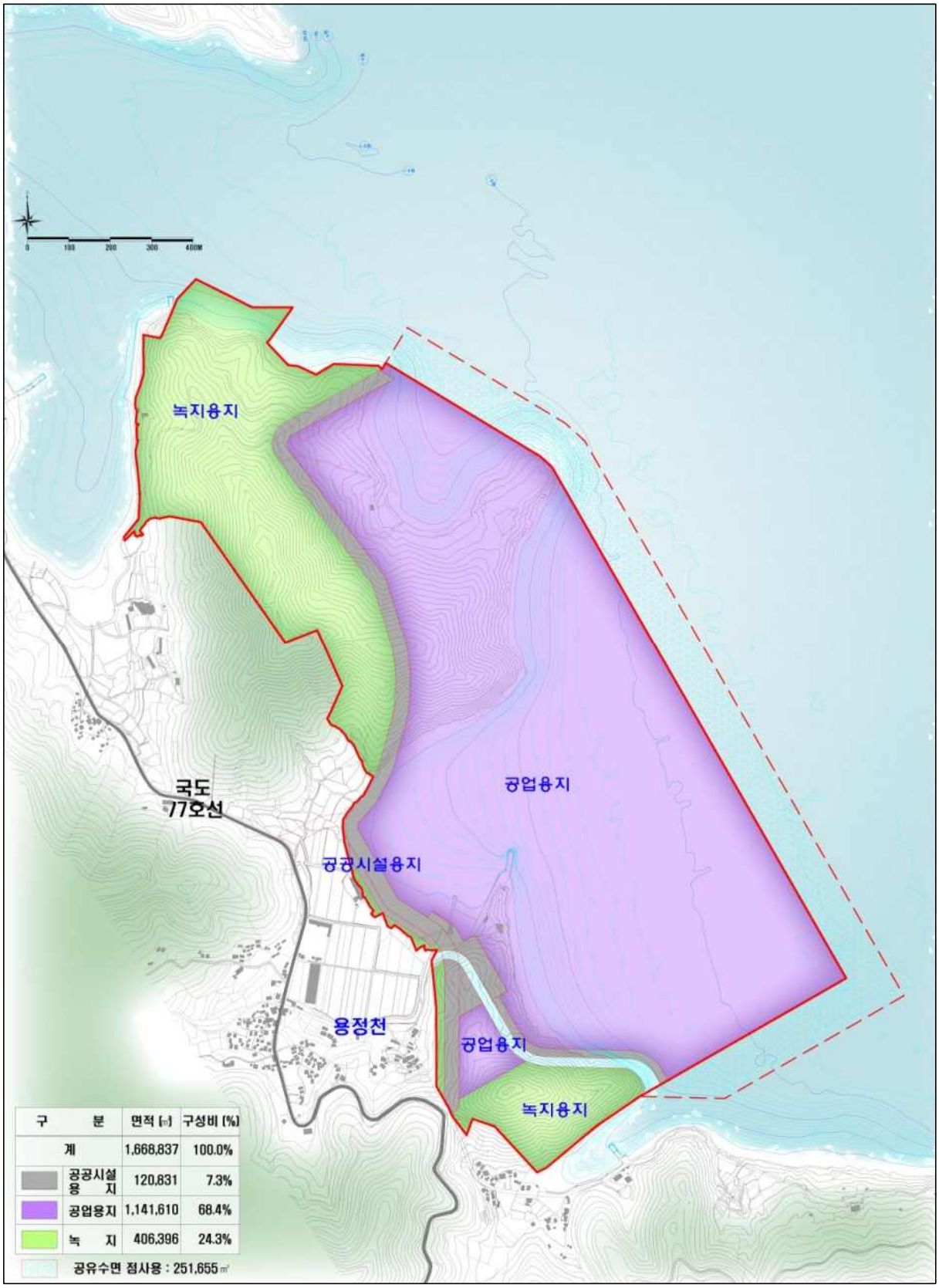
녹지용지
국도
77호선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용정천
공업용지
녹지용지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계 | 1,668,837 | 100.0%
공공시설용지 | 120,831 | 7.3%
공업용지 | 1,141,610 | 68.4%
녹 지 | 406,396 | 24.3%
공유수면 점사용 : 251,655㎡

- 장좌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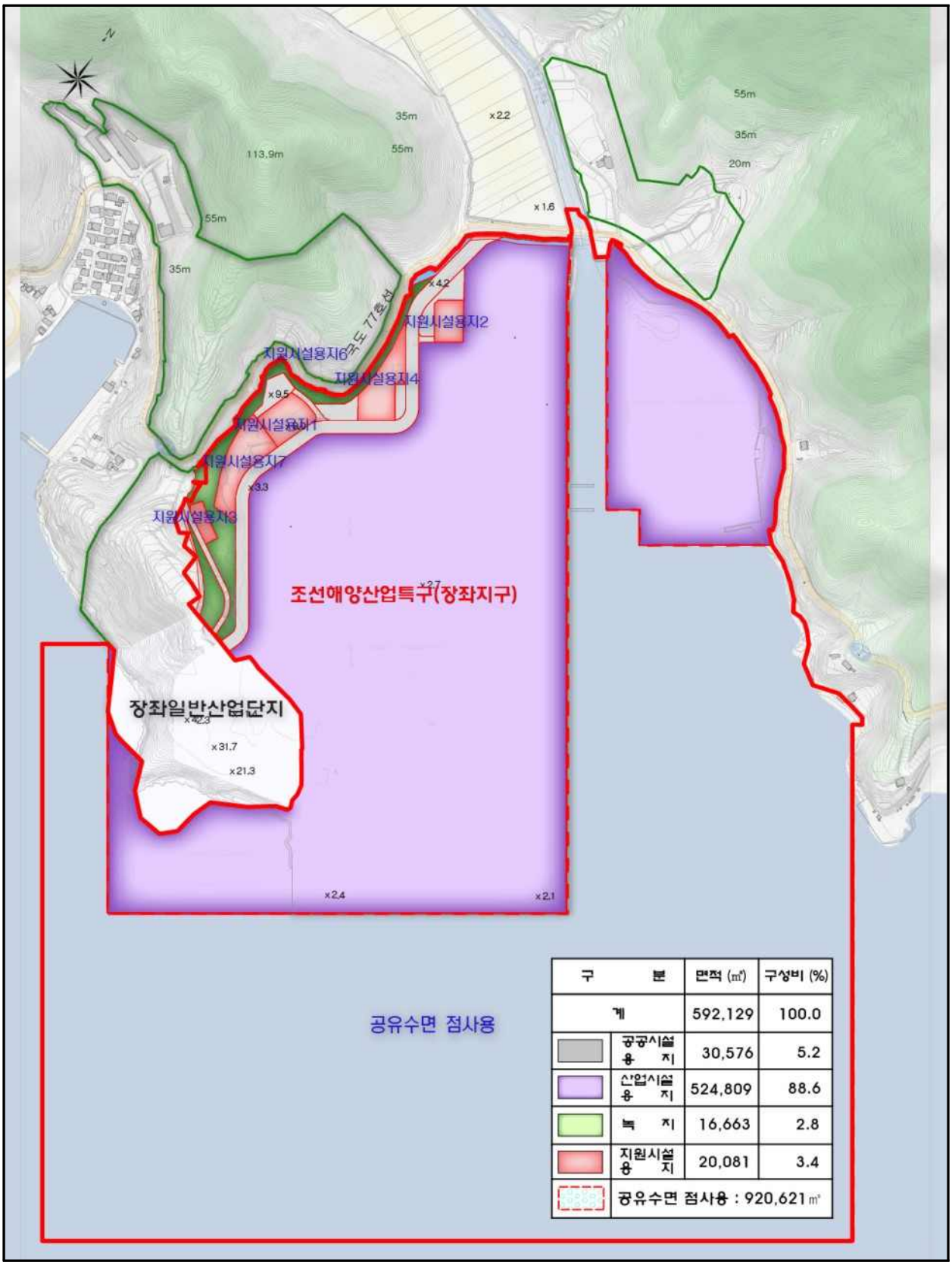
N
35m
x2.2
113.9m
55m
55m
35m
20m
x1.6
55m
35m
x4.2
지원시설용지2
지원시설용지6
지원시설용지4
x9.5
지원시설용지1
지원시설용지7
x3.3
지원시설용지3
조선해양산업특구(장좌지구)
x27
장좌일반산업단지
x42.3
x31.7
x21.3
x2.4
x2.1
공유수면 점사용
구 분
면적 (㎡)
구성비 (%)
계
592,129
100.0
공공시설용지
30,576
5.2
산업시설용지
524,809
88.6
녹 지
16,663
2.8
지원시설용지
20,081
3.4
공유수면 점사용 : 920,621㎡

붙임 2 관계법령(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4.>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

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화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화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